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 순회교사 32명, 특수학교의 교원 58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329명(보건교사 83명, 영양교사 145명, 전문상담교사 101명)을 각각 증원하고, 초·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정원 1,136명,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정원 2,265명을 각각 감축하며, 소규모 유치원 급식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10명(영양교사 10명)을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이체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5명(중등순회교사 5명)을 공립의 각급 학교로 이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8. ~ 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38”을 “2,575”로 하고, 교사 계 “2,518”을 “2,555”로 하며, 중등순회교사 “63”을 “58”로, 특수교육순회교사 “1,627”을 “1,659”로 하고, 특수교육순회교사 1,659 다음에 “영양교사 10”을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444명(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2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1,146명,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27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총계	342,35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811
원장	570
원감	992
교사	13,249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8,683
교장	6,044
교감	6,177
교사	136,462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0,881
교장	3,885
교감	3,666
교사	133,330
특수학교 계	16,795
교장	99
교감	125
교사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 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 수 치료교사를 포함한다)	16,571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21,181
보건교사	8,927
영양교사	6,759
사서교사	1,558
전문상담교사	3,937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538</u>	<u>2,575</u>	+37
교사 계	<u>2,518</u>	<u>2,555</u>	+37
중등순회교사	<u>63</u>	<u>58</u>	-5
.	.	.	
특수교육순회교사	<u>1,627</u>	<u>1,659</u>	+32
<u>영양교사</u>	<u><신 설></u>	<u>10</u>	+10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3